

창업인을 위한 세무회계 가이드 ①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점들

+ 최재영 동서회계법인 이사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통상 사업 아이템, 영업방법,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사무실 위치, 자금, 인력 등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는 실제 창업을 최종 결심하고 난 후 실행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세무 및 회계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락수립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무 및 회계지식을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이러한 분야가 자신의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1편에는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알아둘 점들을 설명할 예정이며, 제3편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방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와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로서 첫 출발이므로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많은 후회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업상”이란 말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적”이란 말은 타인의 지휘와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사업장마다”라는 말은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무실을 만들고 나중에 공장을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경우 공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라고 정의되는 일을 수행하려 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 등은 대통령령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

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질적인 사업자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또는 실질 명의자가 확인된 날)의 직전 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법, 체납법 또는 질서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나 차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미등록 기간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각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하여 지연납부 1일 당 납부세액의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덧붙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연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경우 만약 과세 당국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액 중 매출세액은 추정당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이중 고통을 받게 되며 각종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법에 정한 기한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실경영자 본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3년 2월 15일부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은 통상 신청 당일 발급되나 특별한 경우에는 관할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서류 별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및 법인사업자용 별도양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며, 전대계약(임차인이 다시 재임대한 경우)인 경우에는 최초 임대인인 부동산 소유주의 전대 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소유주의 전대동의를 명시하고 소유주의 날인을 받은 경우도 해당)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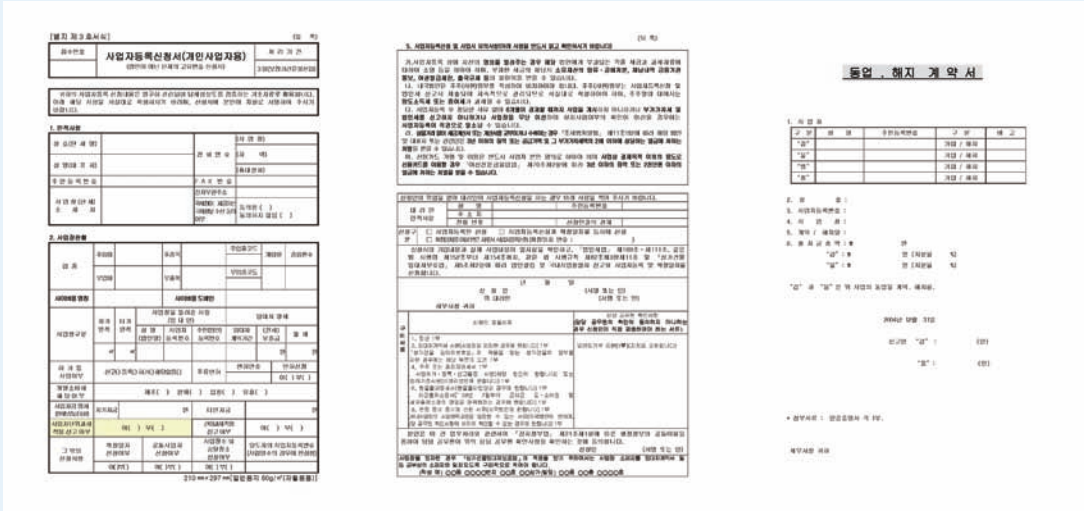
다.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면허가 필요하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러한 관련 법령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동업계약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

동업을 통하여 창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동업계약서에는 반드시 이익의 배분에 관한 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다수의 동업자 중 대표를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1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의 전부가 그 사업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액이 계산되며, 동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동업비율에 따라 전체 소득이 동업자별로 안분되므로 총 부담소득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소득구간별로 소득세율이 누진적(6%, 15%, 24%, 35%, 38%)으로

차등 적용되는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만, 실질이 1인 소득이고 나머지 동업자는 명의만 빌려 준 경우로 밝혀진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액이 재계산되고 가산세도 발생하므로 이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등업 계약서 견본

마.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추가서류

- 법인의 정관(사업자등록 시 신청하는 사업종류가 정관상 목적사업에 명시되어야함)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먼저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최초 정관을 작성할 때 향후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기타 사업도 사업목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관변경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나 등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용 계좌신고(개인사업자등록증 수취 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사업용 계좌신고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사업용 계좌신고는 소득세법상 복식 부기의무자(도소매 등 : 연 매출 3억원, 제조 및 음식점 등 : 연 매출 1.5억원, 서비스업 등 : 연 매출 75백만원 이상자)에 대한 의무 사항이므로 최초 사업개시 시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출이 급격히 증대하거나 시일의 경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일정 시점에 복식부기 사업자가 되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액 또는 매출액의 0.2%로써 가산세율은 낮으나 거래금액이 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매출 및 매입대금, 임차료 및 인건비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 받거나 결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시하면서 사업용 계좌의 개설을 요구하면 통장명을 사업자의 상호(본인명과 상호를 같이 병기하기도 함)로 개설하여 줍니다. 계좌개설 이후 사업용 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법인세액의 10%로 별도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됨)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 200만원 초과~4천 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600만원 초과~8천 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 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소득세액의 10%로 별도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됨)

예를 들어, 소득이 8,800만원으로 동일한 개인과 법인(대표이사 1인 법인)의 경우를 가정할 때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880만원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액은 1,590만원으로 710만원 만큼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생활비 등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분석에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법인대표가 급여소득으로써 8,8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법인세는 소득이 없으므로 부과되지 않고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나 다만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실 부담세액은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적으나 의사결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금액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차이점은 가정을 달리하여 동일한 소득조건하에서 대표이사가 생활에 필요한 돈으로 4,600만원만 급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4,200만원은 사업의 확장이나 장비의 구입용으로 인출하지 않고 남겨 놓았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액은 법인소득 4,200만원(급여처리 전 소득 8,800만원 - 급여처리액 4,600만원)의 10%인 420만원이며 근로소득세액은 582만원(근로소득공제 등 효과 무시 가정)이므로 총 부담세액은 1,002만원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액과 비교하여 582만원 만큼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예시하는 바는 개인사업자가 상기 사례처럼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정부분은 사업의 확장이나 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유보한다 해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의 규모가 더 증가하게 되고 유보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격차는 현저하게 확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2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8억원 정도는 공장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할 때 유보분 8억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약 3억원의 소득세를 투자계획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1.4억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1.6억원의 세액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공장투자계획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금액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중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소득 기준으로 4,990만원까지(연소득 59,880만원)까지는 월 소득액의 약 6.28%(사업자부담분 포함, 건강보험료 5.8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를 납부하게 되므로 유보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 신뢰성 및 평판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를 법인사업자로 제한하기도 하며 관공사, 기타 일반기업의 입찰 등을 진행할 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과거에 공사나 납품 등을 수행한 실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영업방향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과 관공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설립 시에 법인사업자로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대외적 이미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의 매각

사업을 진행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토지 및 건물이 있는 회사를 매각할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사업의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율은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부동산 과다법인(부동산이 총자산의 50% 이상)이 아닌 경우 10%(지방소득세 별도)의 적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상황일 경우 자기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기 표상의 구간별 누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없는 소규모 사업의 양수도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제

법인은 세제상 많은 유리한 점이 있는 동시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불공정한 부의 이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많은 규제조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고가 및 저가양수도, 저가 및 고가 유상증자 및 주식명의신탁 등에 대한 증여의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동산과다법인 등에 대한 종가세, 과점주주의 취등록세 부과 등이 있습니다.

바. 상법상의 규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때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법인을 하나의 독립체로 취급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임원의 보수나 주총결의에 의한 배당,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하는 행위는 제3자인 소액주주 등이 이익을 제기할 경우 배임 또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장단점 등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업전망과 계획에 비추어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일정 기간 사업을 유지한 후 추후에 법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복잡한 절차와 시간의 소요, 과거 실적의 상실, 금융권 대출 차환 불능 및 각종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설립 시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추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